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(차규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89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1.

발 의 자 : 차규근 · 서왕진 · 신장식
김선민 · 이해민 · 김준형
황운하 · 정춘생 · 강경숙
최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임원이 여러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각 법인마다 인건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,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받는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만 적정한 금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6조).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로서 그 지급액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.

1. 해당 법인에서의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
2. 이사회 등 주요 회의 참석 횟수 및 의사결정 기여도
3. 해당 법인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기여도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지급액의 적정성 판단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 입) (생 략)	제26조(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 입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②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 하는 인건비는 해당 임원이 실 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로 서 그 지급액이 적정하다고 인 정되는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 입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③ 제2항에 따라 실질적인 직 무수행을 하였는지 여부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.</u> <u>1. 해당 법인에서의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</u> <u>2. 이사회 등 주요 회의 참석 횟수 및 의사결정 기여도</u> <u>3. 해당 법인의 사업에 대한 전 문성 및 기여도</u> <u>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</u>
<u><신 설></u>	<u>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지급액의 적정성 판단 기준</u>

	<u>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